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합1015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영태

변론 종결2021. 12. 9.

판결 선고2022. 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3. 17. 접수 제17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부담이득의 결정과 징수,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다.

2) B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등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B은 2020. 3. 17.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3. 17. 접수 제171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원고는 B에 대하여 2020. 5. 8.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약사법위반을 이유로 12,293,472,070원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하였고, 2020. 5. 1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3. 7. 1.부터 2020. 3. 13.까지 요양급여비용 12,409,106,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 6. 1.에도 2009. 1. 23.부터 2013. 6. 30.까지 요양급여비용 260,518,140원 및 3,314,622,83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환수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 한다). 위 각 통보 및 결정은 각 통보일 및 결정일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B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1) B은 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① 약사 C과 공모하여 2009. 1. 23.경 C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D약국'이라는 상호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위 D약국을 C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1.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5,159,873,750원을 편취하였고, ② 약사 E과 공모하여 2013. 7. 1.경 E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D약국'이라는 상호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위 D약국을 F이 운영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7.경부터 2020. 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9,446,269,61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각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위 법원 2020고합166호), 위 법원은 2020. 8. 14.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위 법원 2020노466호), 위 법원은 2020. 12. 16. 위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B사이 민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와 같이 B이 2010. 6. 18.부터 2011. 6. 2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20가합102001호), 위 법원은 2021. 4. 21. B은 원고에게 982,987,9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2018.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 소재한 D약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모은 뒤 수사의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D약국의 소유관계 등 운영현황과 추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B의 재산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20. 3. 17. 당시 위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0. 4. 15.경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다.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약국과 관련하여 2018. 4. 9.부터 2018. 4. 13.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2019. 4. 29. 부산지방경찰청에 B이 약사가 아님에도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사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원고가 2020. 4. 16.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B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의뢰서(을 제2호증)에는 D약국의 현황, 운영 주체, 성과 귀속의 주체 등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보유재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2020. 4. 15. 이전에 원고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하여 B의 재산상태를 추적하여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전인 2020. 4. 15.까지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20. 4. 15. 이후인 2020. 4. 24.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20. 5. 8. B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2020. 5. 19.과 2020. 6. 1.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한 점, ③ B의 사무장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2020. 8. 14.에야 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환수결정에 따른 환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환수채권'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2021. 9. 30. 기준으로 총 15,541,895,648원이다(이 사건 환수결정에는 2009. 1. 23.부터 2010. 5.경까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기간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였다).

① 공단부담금(세액 제외)	3,207,727,908	8,751,154,330	11,958,882,238
② 본인부담금	73,491,100	3,542,317,740	3,615,808,840
③ 최종결정금액(①+②)	3,281,219,008	12,293,472,070	15,574,691,078
④ 연체금	20,079,900	1,106,116,379	1,126,196,279
⑤ 납부총액	247,500,000	911,491,709	1,158,991,709
⑥ 미납합계(③+④-⑤)	3,053,798,908	12,488,096,740	15,541,895,648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환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사실에 관하여 행정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9. 4.경 수사의뢰를 하여 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환수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위 증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수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이 B의 적극재산은 2,796,036,363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15,574,691,078원이므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적극재산1)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B의 적극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한 개별공시가격, 건물의 연면적 등이 기재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증거가 아니라 소장의 첨부서류로만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1
2
합계
소극재산
이 사건 환수채무
합계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아내로서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E 명의 약국운영 계좌에서 피고 관련 출금 사실이 확인되고(을 제2호증 제10, 11면), E 명의 신용카드로 B 가족들을 위한 진료비, 여행비가 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2호증 제9, 10면) 피고는 B이 D약국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3. 17. 접수 제171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효량

판사김해마루

판사김도완

별지

1)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B의 적극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고려한 개별공시가격, 건물의 연면적 등이 기재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증거가 아니라 소장의 첨부서류로만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2) 1,297,848,600원 = 2020년 개별공시지가 4,324,000(원/㎡) × 600.3㎡ × B의 지분 1/2

3)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는 1,498,187,763원이고, 이는 2020년 국세청 건물시가 평가법(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2020. 1. 1. 국세청 고시 제2019-32호로 시행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연면적 $2,974,07\text{m}^2 \times \text{m}'\text{당 금액}(\text{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30,000\text{원} \times \text{구조지수 } 100/100 \times \text{용도지수 } 117/100 \times \text{위치지수 } 121/100 \times \text{경과연수별잔가율 } 0.78) \times \text{가감산특례 } 1.25 \times \text{B에 대한 지분 } 1/2]$ 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소가계산서, 건축물대장 등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도 위 시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있다(위 시가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약 150억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2억 원이었으므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의 시가가 140억 원을 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B으로부터 9억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